التميمي و مشاركوه
AL TAMIMI & CO.

KOREAN NEWS DIGEST

Latest Legal News and Developments from the MENA Region

Issue 001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알타미미 Korea Group 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올해에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이 직접 방한하여 건설, 에너지, 방산, 의료, 문화, 정보통신 부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들과 다수의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다시금 중동지역이 한국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맞물려, 저희 알타미미 Korea Group 에서는 중동지역의 급변하는 법적 환경에 대한 한국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활동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Korean News Digest”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알타미미는GCC 6개국을 포함해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를 아우르는 전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동 최대의 전문로펌으로써 지난 30년간 매월 Law Update 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저희 기업고객들에게 역내 최신 법률 동향에 대해 업데이트해왔었습니다.

이에 저희 Korea Group에서는, 한국 고객들께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기사들을 선별하여 Korean News Digest이라는 이름으로 국문요약본을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제공하여 중동지역에 이미 진출해있는 기업고객뿐만 아니라 향후 중동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아국기업 관계자분들도 보다 쉽게 역내 법률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 알타미미 Korea Group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동 대표로펌으로써, 보내주시는 성원에 더 나은 법률서비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티미미 Korea Group 배상

주요 연락처

Omar Omar
Partner, Head of Korea Group
o.omar@tamimi.com

Jiwon Ha
Senior Associate
Dubai, UAE
j.ha@tamimi.com

Hyungmin (James) Song
Senior Associate
Riyadh, Saudi Arabia
h.song@tamimi.com

Dukgeun (Thomas) Yun
Senior Associate
Dubai, UAE
dg.yun@tamimi.com

Yoon Kang
Paralegal
y.kang@tamimi.com

Inhye Park
Paralegal
i.park@tamimi.com

Contents

Disputes

UAE 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한 최근 법령 동향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e UAE 4

UAE 내 중재 동향
Arbitration in the UAE: Pacta Sunt Servanda 5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및 런던국제중재법의 합작 중재기구
The DIFC-LCIA: 10 Years Old and Looking to The Future 6

Corporate

기업 실사의 중요성
Why is Due Diligence a necessity in the Middle East? 7

신규 UAE 외국인 투자법
New FDI Decree in the UAE 8

쿠웨이트의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in Kuwait 9

Banking & Finance / Regulatory

신규 UAE 상계법
The New UAE Netting Law 10

신규 UAE 금융법
New Banking Law: Federal Law No. 14 of 2018 11

UAE 금융 관련 규정 최신 동향
Recent Development in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in the UAE 12

ADGM 내에 암호자산거래소 설립하기
Crypto-Asset Exchange at ADGM 13

바레인의 암호자산 거래 규정
Central Bank of Bahrain Issues Regulations governing Crypto-Asset Services 14

Tax

GCC 세무가이드
Taxes in the GCC 15

Korea Group Press Release and News

17

UAE 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한 최근 법령 동향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e UAE

UAE는 지난 2018. 5. 15. UAE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Law no 6. of 2018)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에 UAE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s Law)상 중재관련 조항들(203~218조)은 개정 중재법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UAE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집행 및 절차에 관한 규정들(235~238조)은 일단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2018. 12. 9. 공포된 내각결정(Cabinet Decision no. 57 of 2018)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서는 위 UAE 중재법 제55조에 따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승인(ratify) 및 집행 결정이 필요한데, 신청일로부터 60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여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많은 경우 3, 4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가 없는 이상 승인 및 집행결정이 인용되는 편입니다. 또한 인용결정은 UAE 민사소송법 제228조에 의해 곧바로 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위 내각결정이 발효된 2019. 2. 9. 전까지는 UAE 민사소송법에 따른 집행 결정 규정이 함께 적용되었는데(이는 외국 중재판정 외에 외국판결의 집행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동 절차는 기술한 UAE 중재법상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9. 2. 9. 발효된 내각결정 85, 86, 88조는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간이화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집행 판사(Execution Judge)는 신청일로부터 최장 3일 내에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명령을 해야 합니다.

알타미미는 최근 앞선 기사에서 언급된 내각결정에 따른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사건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중재지가 런던인 중재판정을 샤르자(Sharjah)에서 집행하는 사안으로, 샤르자 연방법원의 집행판사는 중재판정의 피신청인에게 15일 내로 판정 인용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집행판사는 자산 압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곧바로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각결정은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고 실제 실무에서도 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UAE 내 중재절차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anuary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enforcement-of-foreign-arbitral-awards-in-the-uae-paving-the-way-for-a-new-enforcement-regime/

March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enforcement-of-foreign-arbitral-awards-in-the-uae-paving-the-way-for-a-new-enforcement-regime-2/

UAE 내 중재 동향
Arbitration in the UAE: Pacta Sunt Servanda

최근2018년 공포된 UAE 중재법에 관한 유의미한 두바이 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의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중재합의 조항이 있었고, 이에 중재절차가 2017. 11. 26.부터 진행되었는데, 상대방이 2018. 1. 17.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UAE 중재법이 공포되었고, 2018. 11. 1. 중재판정부는 관할에 관한 피신청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위 중재판정에 대하여 두바이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두바이 항소법원은 위와 같은 이의제기는 UAE 중재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부터 15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중재합의는 분쟁해결의 예외적인 수단이 아니라 대체적 수단이며,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그 합의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판결은 중재가 예외적인 분쟁해결수단이라고 본 기존 판례들과 비교되는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ril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arbitration-in-the-uae-pacta-sunt-servanda/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및 런던국제중재법의 합작 중재기구

The DIFC-LCIA: 10 Years Old and Looking to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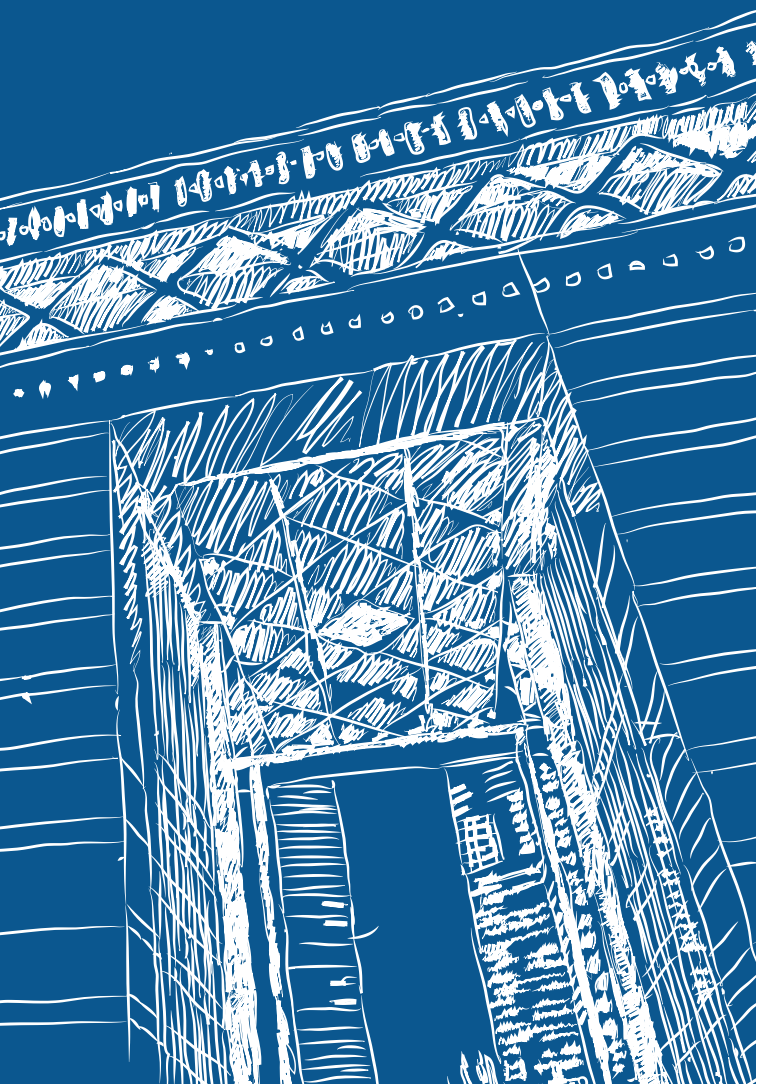

DIFC-LCIA 중재센터는 2008년 UAE 의 최초 경제자유구역인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내에 국제 상사분쟁 해결기구인 런던 중재재판소(LCIA)와의 합작기구로 개설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법령 개정을 통해 중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긴급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새로운 내용을 대폭 도입한 이후 동 센터에 제기되는 중재사건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건의 종류도 건설, 통신, 금융, 해양, 레저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의 경우 이를 집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DIFC-LCIA 중재센터의 경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아직 집행이 거부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DIFC-LCIA 중재센터는 런던국제중제센터의 풍부한 경험과 중동의 지역적 특성을 조화시킴으로써, 중동지역의 중재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국제중재기구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분쟁해결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vember 2018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the-difc-lcia-10-years-old-and-looking-to-the-future/

기업 실사의 중요성

Why is Due Diligence a necessity in the Middle East?

일반적으로 기업 지분을 매수 혹은 양도한다든지, 공시된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적절한 실사 (Due Diligence)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사업을 인수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해당 사업에 대해 실사를 거치기 마련인데, 비록 거래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아래의 실사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1. 영업 실사 (Business Due Diligence)인수 대상기업 (Target) 의 사업운영 및 영업적 측면을 검토함.
2. 재무 실사 (Financial Due Diligence)주로 매수인 혹은 거래관련 대주단에서 선임한 재무자문사를 통해 인수 대상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관련 채무관계 및 리스크를 파악함.
3. 법률 실사 (Legal Due Diligence) 주로 매수인이 선임한 법률자문사를 통해 인수 대상 기업의 다음 사항들을 검토함.
    1. 회사 정관 등의 설립관련 문서
    2. 직원들의 고용계약
    3. 주요 외부 계약
    4. 부동산 등 자산
    5. 지적재산권
    6. 금융/보험 관련 서류
    7. 세무 관련 서류
    8. 송사 관련 서류 등

하지만 중동지역에서는 회사정보와 관련하여 대중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극히 드물고, 소송 기록 등도 당사자가 아닌 한 직접 법원 기록을 입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소유권 확인을 위해서도 등기관련 서류의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혹은 인수대상 기업에 해당 서류 들을 직접 요구하거나 관련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M&A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래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파악하고 인수대상 기업의 실질적인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실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반드시 경험있는 자문사들을 섭외하여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거래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ovember 2018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why-is-due-diligence-a-necessity-in-the-middle-east/

신규 UAE 외국인 투자법

New FDI Decree in the UAE

작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자국 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와 관련한 법령 (Decree Law No. 19 of 2018)을 공표함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중동의 투자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FDI를 유인•장려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부문의 고용창출 등 궁극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업활동을 하려면, 최소 51% 지분은 반드시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보유한 개인/기업에게 주어야 한다는 회사법 (Commercial Companies Law No. 2 of 2015) 상 요건은 본 법령을 통해, 허가된 일부 산업부문의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최대 100%까지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 법령은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대규모의 기업에만 적용되며, FDI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자의 본국 및 해외 사업장 수, 아랍에미리트 내 설립예정인 회사에서 채용예정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자의 100% 지분소유 허가여부를 내각에 제언하게 됩니다.

또한, 본 법령은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Negative List"라고 불리는 산업부문을 별도로 분류하여, 외국인투자자의 100% 지분소유가 불가능한 산업분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Negative List에는 은행•금융, 보험, 육로•항공 운송, 커머셜 에이전트, 의료용 소매업 등이 포함되며, 내각의 결정에 따라 해당 리스트는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Positive List"의 경우, 내각이 직접 외국인투자자가 설립할 수 있는 회사형태, 지분 요건 (최대 100%), 최소 자본금, Emiratisation (최소로 고용해야 하는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의 수) 등을 결정하게 되며, 현재까지는 어떤 산업부문이 Positive List에 포함될 지 공표된 바는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직접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두바이 경제개발부 산하의 임시위원회에 회사 정보, 사업타당성보고서 (Feasibility Study), 향후 투자계획 등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임시위원회는 신청내역이 FDI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대 100% 지분보유까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anuary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the-highlight-of-2018-a-new-foreign-direct-investment-decree-in-the-uae/

쿠웨이트의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in Kuwa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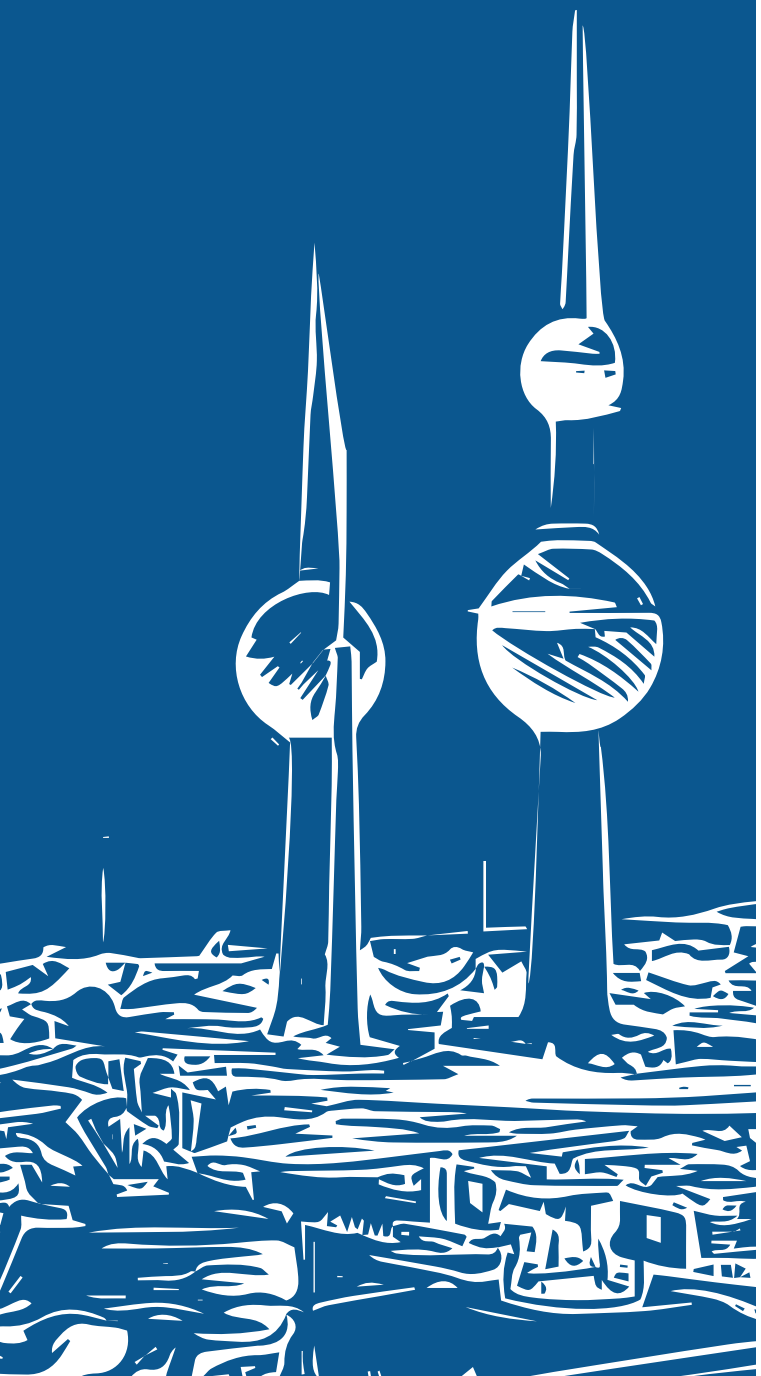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 허가 (Foreign Investment Licence)

쿠웨이트 외국인직접투자법(Foreign Direct Investment Law, Law No. 449 of 2013)은 상법상의 외국인 투자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외국인투자진흥청(KDIPA)은 외국인직접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추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설립을 허용해주고 있으며, 특히 그 평가 과정에서 투자로 인한 쿠웨이트 국적자의 고용창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쿠웨이트 국적자에 제공되는 교육 기회, 쿠웨이트 경제 구조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주로 검토하게 됩니다.

KDIPA 는 이른바 PSM 이라고 불리우는 점수제도 (Decision No. 313 of 2016)를 통해 외국인 투자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투자자에게 외국인투자허가를 허용할지 여부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할 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허가 취득과 더불어 최장 10년까지 세금 및 관세 면제를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Ministerial Resolution No. 75 of 2015 를 통해 100%지분 소유를 허가하지 않는 산업 분야도 명시하고 있으니, 이러한 Negative List도 사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anuary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foreign-investment-in-kuwait/

신규 UAE 상계법

The New UAE Netting Law

"상계 (Netting)"는 금융업계에서 계약 당사자 간 이자 또는 대립되는 채무 (competing rights) 지급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표준 메커니즘으로, 채무 자체를 단일 순채무 또는 지급액으로 만들어 채무의 이행 및 지급•결제를 간소화하고, 신용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DIFC, ADGM 등 아랍에미리트 내 금융프리존에만 상계관련 법률이 존재했고, Onshore의 경우에는 파산법 (Federal Bankruptcy Law No. 9 of 2016)을 적용하여 개인•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채무를 처리해왔지만, 2018년 UAE에서는 상계관련하여 새로운 법령 (Federal Law No. 10 of 2018)을 공표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파산법과 민사거래법 (Civil Code)에서 상계 관련하여 해석상 충돌하던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규법령에 따르면 상계대상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금융계약 (Qualified Financial Contract)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청산, 지급의무 및 계약 해지 또는 청산 시의 잔여채무를 들고 있으며, 해당 채무를 하나의 단위로 변환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특히,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은 적합판정을 받은 금융계약 (*통화•환율 스왑거래, 외화 및 신용거래, 선물금리계약, 파생상품, 담보물 등)과 상계계약 (Netting agreements)으로, 여기서 말하는 상계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금융계약의 집행에 있어 "상계"를 포함한 계약을 가리키며, 샤리아 율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도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anuary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netting-law/

신규 UAE 금융법
New Banking Law: Federal Law No. 14 of 2018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작년 9월, 기존의 은행•금융법 (1980 Union Law)을 대체하는 신규 법률로 Federal Law No. 14 of 2018 (Regarding the Central Bank and Organ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Activities)를 공표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더욱 효과적으로 은행•금융업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중앙은행의 관리•감독을 받는 주요 금융활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금융거래에는 예금 입•출금, 신용거래, 통화 교환, 금융상품 (채권, 파생상품, 이슬람 채권 (Sukuk))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두바이 국제금융무역센터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이하 "DIFC"), 아부다비 글로벌마켓 (Abu Dhabi Global Market; 이하 "ADGM") 등 프리존은 본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법령을 통해 설립되는 샤리아위원회 (Higher Shari'a Authority)에서는 이슬람 금융과 관련한 규제를 도입하고, 관리•감독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 공공부문에서 발행한 증권의 거래, 발급, 주요 중개인 선임, 통화 발행 등의 행위 등이 본 법령에 의해 규제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법령은 금융기관의 라이센싱 요건 및 절차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은행의 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은 반드시 공공합자회사 (Public Joint Stock Company)로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기타 금융기관은 민간합자회사 (Private Joint Stock Company) 또는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 아랍에미리트 국적자 (개인•기관)의 최소지분보유율은 6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본 법령은 중앙은행에 라이센싱을 관리•감독하는 재량권을 주어 경우에 따라 금융기관의 라이센스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시스템 (Register)을 도입하여 금융기관이 정관 등 사업관련 문서 변경 시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 요구, 합병 허가, 자산동결, 금융기관 청산 및 경영권 인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ebruary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new-banking-law-federal-law-no-14-of-2018/

UAE 금융 관련 규정 최신 동향

Recent Development in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in the UAE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 아부다비 등 중동지역 내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관련 신규 법령•규제를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금융부문의 규제 및 개혁을 위한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령 적용대상을 Onshore와 금융프리존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Onshore:

1. 신규 은행•금융법 (Federal Law No. 14 of 2018) - 약 40년간 아랍에미리트의 중앙은행 및 기타 은행•금융기관을 규제하던 법 (1980 Union Law)이 신규 법령으로 대체되었고, 중앙은행의 신규 규정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게 됨. 특히, 신규 법령은 중앙은행이 국제적 수준에 맞춰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DIFC, ADGM 등 프리존에는 적용되지 않음.

2. 금융리스법 (Federal Law No. 8 of 2018) - 본 법령에 따라 중앙은행은 리스금융을 규제하고, 관련면허 인가를 위한 세부규정을 공표할 수 있음.

3. 자금세탁방지법 (Federal Law No. 20 of 2018) - 작년 10월 30일에 공표된 해당 법령에는 불법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거래 허가 등 향상된 조사절차, 상향조정된 벌금, 금융범죄와 관련한 자금의 동결절차 등이 새롭게 추가됨.

4. 중앙은행 규정 -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은 개별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을 규정하였으며, 기존에는 은행이 수수료에 VAT 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나 새로운 규정을 통해 VAT도 청구할 수 있게 됨. 또한 휴면계좌와 관련하여 미지급 잔액처리 절차 등도 새롭게 공표됨.

- 금융프리존:

1. 패스포팅 (Passporting) 권리 - 두바이 금융서비스 규제위원회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이하 "DFSA")와 ADGM 내 금융서비스 규제위원회 (FSRA)는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조성가능한 펀드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내역을 공표했으며, 잠재투자자가 패스포팅 권리 행사를 위한 상세절차를 공시함.

2. 자금세탁방지 - 2018년 10월에 DFSA는 자금세탁방지 및 각종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실사 강화, 거래내역 기록, 내부 감사, 전자거래 감독 등이며, 올해 2월에는 FSRA도 ADGM 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규정을 공표함.

3. DIFC 회사법 - DIFC는 작년 11월에 회사법 (DIFC Law No. 5 of 2018)을 공표하였음, DFSA의 규제를 받는 기업들의 경우DIFC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지분구조 (Ultimate Beneficial Owner) 제출 의무가 면제됨.

개정 및 신설된 법령의 모든 목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rch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recent-development-in-financial-services-regulation-in-the-uae/

ADGM 내에 암호자산거래소 설립하기

Crypto-Asset Exchange at ADG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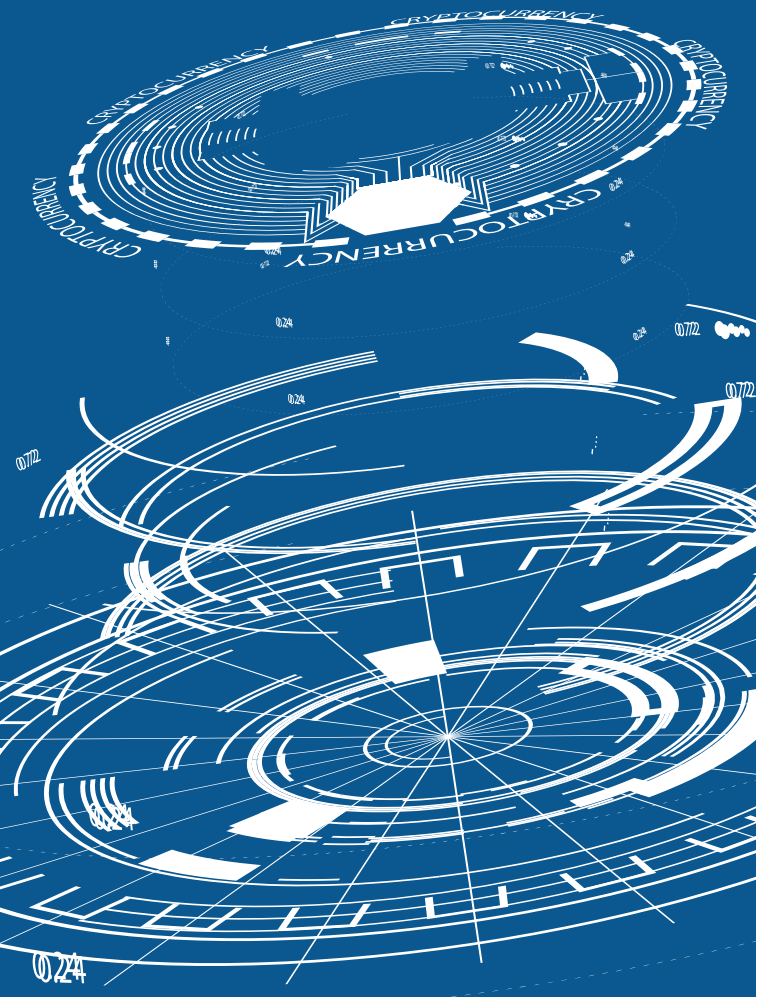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암호자산 (crypto-asset), 암호화폐 (crypto currencies) 등이 급부상하면서, 암호자산 거래 시 위험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을 대표하는 금융프리존인 아부다비의ADGM에서는 2018년 6월 산하 금융서비스 규제위원회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이하 "FSRA")를 통해 거래소 설립, 암호자산 교환, 거래 등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규정을 통하여 ADGM 내에 설립이 가능해진 암호자산거래소 (Crypto Asset Exchange)는 다자간의 디지털시스템으로, "암호자산 사업의 운용 (Operating a Crypto Asset Business)" 인가를 받은 개인 또는 투자상품거래소는 이를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암호자산에서 파생되는 이자의 거래를 희망하는 당사자를 연결해주며, "인가받은 암호자산 (Accepted Crypto Asset)"은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되어 직접 교환이 가능합니다. FSRA는 암호자산의 시가 총액 (market capitalisation), 특정 위험 및 불안정성에 대한 반응여부, 자산의 추적가능여부, 최근 거래기록, 수요량, 특정 암호자산의 거래목표 등을 근거로 해당 자산이 거래가 가능한 "인가받은 암호자산"임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비유동적이거나 불완전한 (immature) 암호자산과 같은 위험부담이 높은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ADGM 내에서 모든 암호자산이 거래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ril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crypto-asset-exchange-at-adgm/

바레인의 암호자산 거래 규정

Central Bank of Bahrain Issues Regulations governing Crypto-Asset Services

바레인 정부는 중동지역 내에서 핀테크 허브로 도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레인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등 암호화된 자산 (crypto-asset)의 인가•감독 등을 다루는 종합적인 규제안을 공표하면서 바레인 정부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안은 전 세계적으로 암호자산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의 위험과 암호자산의 불법적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표한 것으로, 암호자산과 관련한 라이센싱 및 암호자산의 거래 (교환, 매각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 규제안은 바레인 중앙은행이 2017년 6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샌드박스 덕분에 다양한 암호자산 관련기업은 별도의 승인•허가없이 통제된 가상공간 안에서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자사제품, 서비스, 플랫폼 등을 직접 시험해 봄으로써 까다로운 규제•금융요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제안은 암호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라이센싱 요건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암호자산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려는 기업은 바레인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법인이거나 해외기업의 바레인 지사만 가능하며, 반드시 바레인 중앙은행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모든 주주 및 자회사 정보뿐만 아니라 Controlled Function 임직원 (* 이사 (Director), 고위 임원 (Chief Executive/ General Manager), 부문장 (Head of Functions), 정보보안 총괄책임자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감사책임자 (Compliance Officer), 자금세탁 보고담당자 (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에 대한 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자본요건은 암호자산을 이용한 사업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ril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central-bank-of-bahrain-issues-regulations-governing-crypto-asset-services/

GCC 세무가이드
Taxes in the G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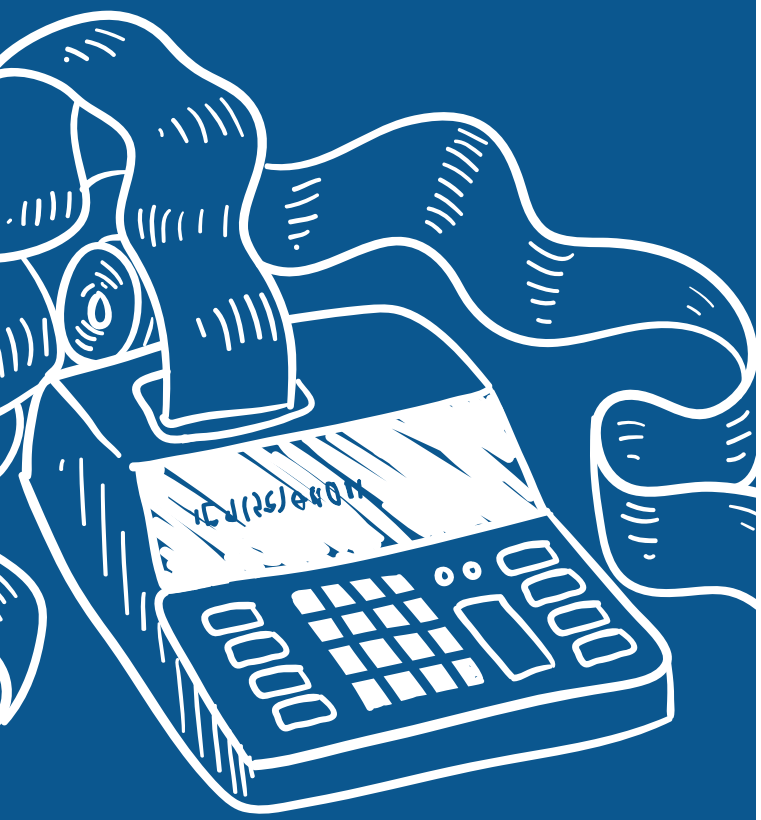

GCC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부담으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GCC 국가들은 최근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구조를 다양화하려는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세법을 개정하고 VAT 등 간접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GCC 국가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세금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GCC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세금들과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

   - 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직접세.
   - 실무적으로, UAE 및 바레인은 오일/가스 산업 분야의 회사들 혹은 외국은행의 지점들에게만 법인세를 부과함.
   -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에서는 외국인 주주가 있는 현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익 중 외국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됨.
   - 세법상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Permanent Establishment를 통해 GCC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GCC 국가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됨.

2. 원천징수세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함에 있어 소득의 원천이 된 국가에서 공제되는 세금.
   - UAE와 바레인은 원청징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다른 GCC국가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을 지급할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부과.
   -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 더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Zakat

   - 이슬람 국가 고유의 세금으로서 사우디, 쿠웨이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됨.
   - Zakat base 중 내국인 주주 혹은 GCC 국적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2.5%의 세금이 부과됨.

4. VAT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 GCC 국가들은 5%의 VAT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사우디 및 UAE에서는 2018년 1

월 1일부터, 바레인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사우디, UAE 및 바레인에서는 자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자산 양도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물품세

-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
- GCC 국가들은 물품세에 관한 협약을 채택.
- 현재까지 사우디, UAE, 바레인, 카타르는 담배 (100%), 에너지 드링크 (100%) 및 탄산 음료 (50%)에 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음.

6. 관세

- GCC 국가들은 통일된 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관세는 GCC 국가에 최초 통관시 부과.
- 통상 CIF 인보이스 금액의 5%가 부과되며, 물품에 따라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음.

7. 부동산 등록세/인지세

- 오만과 바레인에는 부동산의 양도 및 등록시 인지세가 부과됨.
- UAE에서는 부동산의 양도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 양도시 등록세가 부과됨.

8. 결어

- GCC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가지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
- 다만, VAT 등 새로운 세금의 도입, GCC 과세당국과 조세조약의 해석상 차이로 인하여 세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GCC 국가들의 세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GCC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세법의 변경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January 2019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taxes-in-the-g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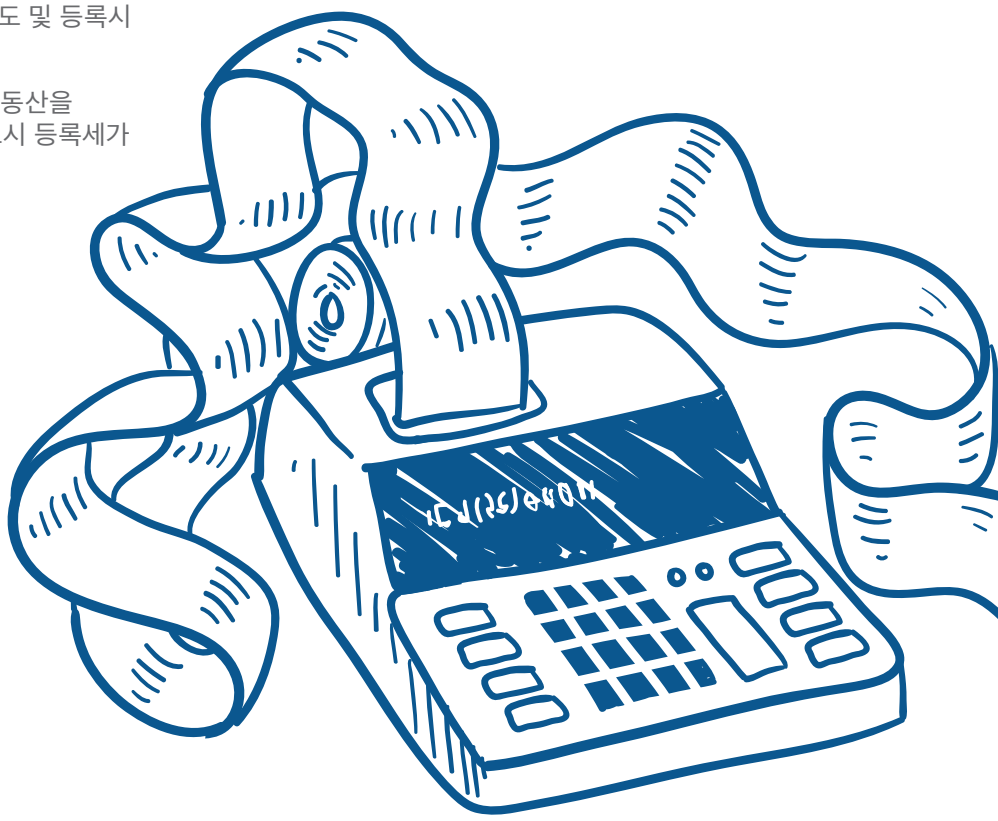

Korea Group Press Release

1. Legal Times Special Report - 중동 투자에서 분쟁해결까지, 한국 기업의 '수호천사'로 활약하는 Al Tamimi 한국팀의 변호사들

지난 4월, 저희 알타미미의 Korea Group 변호사 3인 (하지원, 송형민, 윤덕근)은 소송 및 중재팀 변호사 3인 (Thomas Snider, Naief Yahia, Saeed Alqahtani)과 함께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대한상사중재원, 해외건설협회, 법무법인 율촌 등과 함께 중동지역의 전반적인 법률환경 및 분쟁해결에 초점을 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중동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건설프로젝트관련 분쟁에 대비해, 금번 세미나에서는 건설분쟁해결 방안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실제 자문사례를 공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알타미미팀의 한국방문은 국내 저명한 법률잡지인 리걸타임즈에 특별인터뷰 형식으로 게재되었으며,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사에서는 알타미미 Korea Group의 전방위적인 활약상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전지역에 걸쳐 자문하고 있는 한국팀의 상세한 자문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13

2. 법률신문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중동 최대로펌 알타미미와 국제세미나 개최

저희 알타미미는 지난 4월 24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와 공동으로 "중동 국제중재의 최근 동향 (Emerging Trend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Middle East)"이라는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알타미미에서는 국제중재팀장인 Thomas Snider 미국변호사, 소송전문 파트너변호사인 Naief Yahia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상주하는 Saeed Alqahtani 변호사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를 하였으며, 본 세미나에는 국내외 로펌 관계자와 중동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저유가로 경제위기를 맞았던 산유국이 금융, 관광 등 경제다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 발주처 및 시공사 간 클레임 등 국제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중동지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분쟁해결방안으로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국제중재가 주목을 받으면서, 알타미미는 본 공동세미나를 통해 관련 당사자가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혜안을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본 세미나와 관련한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589

3. 팍스넷뉴스 - 송영완 해건협 부회장 "해외건설 분쟁 대처방안 마련해야"

저희 알타미미는 지난 4월 26일, 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에서 국내 건설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동지역 건설 분쟁해결"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송영완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본 세미나에서는 알타미미의 국제중재팀장인 Thomas Snider 미국변호사, 소송전문 파트너변호사인 Naief Yahia,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상주하는 Saeed Alqahtani 변호사가 중동지역 건설 분쟁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를 했고, Korea Group 변호사 3인 (하지원, 송형민, 윤덕근) 역시 국내 기업의 중동진출 시 유의사항 및 주요 분쟁 사례, 중동지역 내 민관합작투자사업 (PPP) 법령체계 및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동향 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와 관련한 기사 전문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 http://www.paxnetnews.com/articles/17415

Korea Group News

1. 영입인사 - 알타미미 Korea Group, 율촌 파트너 출신 윤덕근 변호사 영입

알타미미 Korea Group은 국내 건설사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하고자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팀에서 파트너로 활약하던 윤덕근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알타미미 합류 전, 법무법인 율촌에서 8년간 근무하며, 각종 건설분쟁 관련업무를 수행하였고,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King's College London)에서 건설법과 분쟁해결을 공부한 것을 계기로, 영국의 건설 전문 로펌인 핀센트 메이슨 (Pinsent Masons) 런던 사무소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PPP (민관합작투자사업) 전문가로, 중동 내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자문에서 활약이 기대되며, 현재 새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외부 심의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2. 한국팀장 하지원 변호사, UAE 소재 대사관 및 영사관 법률자문가 선임

현재 한국팀장을 맡고있는 하지원 변호사는 4년 연속으로 아부다비에 소재한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주두바이 총영사관의 법률자문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의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GHKOL)로 선임되어 국내 헬스케어 관련기관의 중동진출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3. 송형민 변호사,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대사관 및 영사관 법률자문가 선임

송형민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알타미미 한국팀에 합류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국내 기업관계자분들과의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현지에서 사업활동 시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저희 알타미미가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작년 가을부터 송형민 변호사는 주리야드 대사관 및 주젯다 총영사관 법률자문관으로 위촉되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송형민 변호사, 총영사관 주최 세미나에서 국내 기업관계자 대상으로 발표

지난 6월 20일, 송형민 변호사는 주젯다 총영사관에서 주최한 국내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되어, 사우디아라비아 조세법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외국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운영 시에 조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이중과세 방지협약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실제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조세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세무당국과의 분쟁과 더불어 법인 청산, 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